

#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활동 및 공연, 각종 축제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함 (안 제2조)
  -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둠 (안 제3조)
  - 위원회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명시함 (안제4조)
  - 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 지역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 제천의병 기념사업 및 의병정신을 함양하기위한 각종 문화사업
  -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시장은 이의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 결산서 제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단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제3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흥완식)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활동 및 축제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사

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문화예술위원회의 법인격과 정관, 사업, 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 시의 재정지원, 공유재산사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사업계획승인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허가를 위한 절차로서,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운용규정등은 상위법령에 저촉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필요성과 연간 소요 예산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 질의) 축제추진위원회 명칭은 몇년도에 바뀌었나요? (조덕희 위원)

답변) 작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질의) 현재 이사회가 7명이고 운영위원회가 15명이네요. 전하고 축제추진위원회와 있을 때와 이사사회와 운영위원회 인원은 같습니까? (조덕희 위원)

답변) 인원은 약간 다릅니다.

질의) 좀 더 보강이 되었나요? 몇 명이 보강이 되었죠? (조덕희 위원)

답변) 그렇습니다. 한 서너명 더 보강했습니다.

질의) 문화예술위원회로 하게 되면은 그럼 문화원과 기능 위축은 없는지요? (조덕희 위원)

답변)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질의) 이번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많은 제천시민들이 혼돈이 올수 있다. 그런 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한 기능을 잘 보강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답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질의) 먼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문화예술위원회도록 되는 것인가요? 폭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인가요? (오선균 위원)

답변)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별지로 거기보시면 제천의병에 관한 제천의병

기념사업 및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병제만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병에 관한 사항을 총괄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됐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로 기존 축제추진위원회 하던 범위보다 더 넓혀서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질의)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5회 청풍호벚꽃축제를 주최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향후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도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꽃임 위원)
- 답변) 사단법인을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주무관청인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 제천시에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축제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치 않았다 치더라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꽃임 위원)
- 답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라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봤더니 그 사항은 주무관청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 그러면 주무관청에 도에서 왜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까? (김꽃임 위원)
- 답변) 그 사람들이 조례가 없으면 법적안정성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
- 질의) 지금 당 위원회에 제출된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조례

- 안, 이 조례안이 아직은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니까 축제추진 위원회조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김기상 위원)
- 답변) 예, 그렇습니다.
- 질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었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위원장을 선택을 해 놨어요. 위원도 선택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예.
- 질의) 조례가 형성된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 지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의회를 어떤 형태로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사전에 서로 교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하고 조례가 형성되기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 입니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예술위원회가 사업을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달라진 사업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부분입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의병에 관한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 질의) 전에 의병에 관한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의병에 관한 사업을 한 부서가 없었습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그때는 의병기념사업회, 의병유족회 이런데서 했습니다.
- 질의) 의병기념사업회하고 유족회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예.
- 질의) 거기하고 마찰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그 부분은 마찰이 없도록.
- 질의)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그래야 완벽하게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의병기념사업회가 활동이 유명무실하니까 새로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것을 없애는 방안도 이 조례에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김기상 위원)
- 답변) 굳이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질의) 그러면 이부서, 저부서에서 사업을 같이 합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기존에 있는 의병기념사업회는 그대로 가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의 병에 관한 업무를 더 보완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될것 같습니다.
- 질의) 그렇게 제천시가 인력이 남고 재정형편이 좋아가지고 양쪽으로 사업을

- 할 수 있는 사업 구분도 제대로 안 되면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 딱딱 이것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그렇습니다.
- 질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일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 주자인 여기에 힘이 실어질 것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그것을 꼭 대립적으로 보지 마시구요.
- 질의) 제천의병기념사업 및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 이것을 예술위원회로 갔다고 완전히 구분되면 괜찮아요. 현재 의병사업단하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발생되니까 좀 여기에 주무관청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사단법인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조례라든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유명무실할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질의) 축제추진위원회도 조례가 있는데 안정성 확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이 축제추진위원회 조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6조하고 7조에 위원회 공유재산 사용등 이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어요. 문화문화예술위원회는 결국은 재산조성하고 재정지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기에 조례에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 이것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6조하고 7조가 상당히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조례가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은 추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질의) 제 6조에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하고 2항에서 시는 위원회를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관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재산 조성이라든지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이것은 현재 축제추진위원회 만약에 존속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하던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질의) 제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 답변)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죠.
- 질의) 현실에 맞게 여태까지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이 잘해 왔어요.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이부분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김기상 위원)
- 답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축제추진위원회때도 마찬가지이로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그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고요. 또 공유재산 사용도 지금 시의 건물을 갖다가 이용을 계속축제추진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질의) 그러면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김기상 위원)
- 답변) 공유재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되지 축제추진운영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7조 내지 6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 제정하는데 집어 넣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5. 기타 의견

“없음”

## 6. 토론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